"서로 존중하며 더불어 성장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2026학년도 2학기 2차 정기시험 시간표 및 교과별 출제 범위 안내	교무실 02-3700-5600 담당자 02-3700-5673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사랑스러운 자녀들의 학교생활을 위하여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지축중학교 학부모님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23일부터 11월 25일에 실시되는 본교 **3학년 2학기 2차 정기시험의 시간표 및 교과별 출제 범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들이 평가에 차질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3학년 2학기 2차 정기시험 시간표>

일자 / 교시	11.23(월)	11.24(화)	11.25(수)
1교시	자기주도학습	자기주도학습	자기주도학습
2교시	과학	영어	국어
3교시	역사	사회	수학
4교시	수업(정답 확인 및 정리)		

※ 매 교시 시작 5분 전 교실에 입실

※ 1, 2학년 수업: **정상수업 운영**, 1~4교시 시정표는 3학년과 동일하게 운영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불허기간 : 11.23(월)~11.30(월)**

- 정기시험 및 성적에 반영하는 시험기간 동안의 교외체험학습 시 성적처리는 미인정결석 인정점(최하점의 차하점)을 준다.
- 이의신청기간인 정기시험 종료 익일로부터 3일간(수업일 기준) 체험학습 불허

※ 분리고사실 미운영

- 코로나19 및 독감 확진자는 2교시 시험시간 직전 등교하여 해당 학생의 교실에서 시험을 치르되,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실의 가장 뒷자리에서 시험을 실시함.
- 코로나19 및 독감 확진자 인정점 안내

		코로나19	독감인플루엔자
미응시자 평가 인정 비율	확진자	100%	100%
	유증상자 검사 당일	(확진 시) 100% (미확진 시) 80%	

<2학기 2차 정기시험 교과별 출제 범위>

	3학년
국어	교과서 12 ~ 39쪽, 120 ~ 139쪽, 170 ~ 180쪽 1.(1) 허생전 3.(1) 능동적으로 읽기 4.(1) 비교하며 읽기 *학습지 포함
수학	교과서 164~200쪽, 222~236쪽, 학습지 Ⅴ. 원 1. 원과 직선 2. 원주각 Ⅵ. 통계 2. 상관관계
과학	교과서 174 ~ 235쪽, 해당 단원 학습지 Ⅴ. 생식과 유전 2. 유전 Ⅵ. 에너지 전환과 보존 1. 역학적 에너지 전환과 보존 2. 전기 에너지의 발생과 전환 Ⅶ. 별과 우주 1. 별
영어	교과서 7, 8 단원(p.118 ~ p.153), 7, 8단원 학습지, 추가 읽기 자료 7. Technology in Our Lives 8. The Joseon Dynasty Through Paintings
역사	교과서 84 ~ 85쪽, 88 ~ 95쪽, 108 ~ 157쪽 Ⅲ. 고려의 성립과 변천 2. 고려의 대외관계 3. 몽골의 간섭과 고려의 개혁 Ⅳ. 조선의 성립과 발전 Ⅴ. 조선 사회의 변동 1. 조선 후기의 정치 변동 2. 사회 변화와 농민의 봉기 3. 학문과 예술의 새로운 경향
사회	교과서 46~99쪽 경제생활과 선택(3단원) 시장 경제와 가격(4단원) 국민 경제와 국제 거래(5단원)

<2026학년도 학업성적관리규정 결시생 성적 처리>

제17조(결시생 성적 처리)

① 교과(목)별 정기시험 및 수행평가[1]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결시생)의 성적처리는 결시 이전·이후의 성적 또는 기타 성적의 일정비율로 환산한 성적(인정점)을 부여하되, 인정 사유 및 인정점의 비율 등은 ②, ③항에 준하여 처리하며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학업성적 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정기시험 결시생에 대한 인정점은 동일 학기 내 학생이 응시한 정기시험 성적을 기준으로 산출하되, 해당 결시의 반영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 부여한다.

- 단, 정기시험 성적이 없는 경우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인정점을 산출한다.

일반결시: 학생본인의 응시고사 점수

$$\times \frac{\text{결시한 과목의 정기시험 학년 평균점수}}{\text{응시한 과목의 정기시험 학년 평균점수}} \times \text{해당결시 반영비율}$$

모두결시: 결시한 과목의 본인 수행평가 원득점

$$\times \frac{\text{결시 과목의 정기시험 학년 평균점수}}{\text{결시 과목의 수행평가 학년 평균점수}} \times \text{해당결시 반영비율}$$

가) 100% 인정점을 반영하는 경우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인한 결시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결시(징병 신체검사, 증인 출두)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 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로 인한 결시
4) 경조사로 인한 결시
5)「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6호의 조치로 인한 결시
6)「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정폭력피해학생에 대한 임시보호 기간 중의 결시
7) 상급학교 진학 시험의 경우 해당 소요일에 한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학교장이 인정하는 결시

나) 80% 인정점을 반영하는 경우

1) 질병으로 인한 결시
   - 질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또는 증빙자료(학급담임교사의 확인서) 등을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결시
2)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결시
3)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타 사유(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결시(학급담임교사 확인서 첨부)
4) 여학생의 생리통으로 인한 결시
   - 생리통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등 첨부
   - 시험일 중 1일만 인정함.

다) 당해 정기시험의 해당 과목 최하점 미만으로 부여하는 경우

1) 미인정 결시 (당해영역의 최하점 -1)
2) 학업중단숙려 참여 학생의 결시 (당해영역의 최하점 -1)

---

1) 수행평가의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 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만 적용함.

제22조(부정행위자의 성적처리)

① 부정행위의 종류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시험 중 다른 학생의 답을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2) 시험 교과의 내용을 종이, 옷, 피부, 책상, 필기구, 전자기기 등에 기록하여 시험 중에 소지하거나 보는 행위
3) 시험 중 다른 학생과 손동작, 발동작 소리, 눈짓, 몸짓 등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행위
4) 시험 종료령이 울린 이후에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5) 감독교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시험 감독을 방해하는 행위
6) 휴대폰, MP3, 전자시계(시각 표시 기능만 있는 시계 제외) 등 각종 전자 제품을 휴대하거나 자, 컴퍼스 등 시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도구를 소지하고 시험을 보는 행위
7) 평가문제지와 답안지 유출 및 답안지를 조작하는 행위
8) 기타 상기 행위에 준하는 행위

② 부정행위 의심자에 대한 부정행위 여부 및 성적처리는 유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판단한다.

③ 부정행위자(협조자 포함)의 성적처리: 위원회 심의 결과 부정행위자(협조자 포함)로 결정되면

1) 부정행위자(협조자 포함)의 OMR카드(기타 답안지 등)를 회수하여 적색으로 사선을 긋고 '부정'이라고 표기한 후 해당 교과 담임에게 알려 해당 과목의 성적을 학업 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2) OMR 답안지는 수정하지 않고 [성적]-[정기시험]-[성적관리]에서 부정행위자의 해당 교과점수를 심의 결과 점수로 입력한다.
3) 부정행위로 인해 해당교과 최하점이 0점이 되는 경우 결시생 성적처리시 최하점 기준은 부정행위 처리 전 최하점으로 한다.

④ 부정행위 의심자 적발 시 감독교사는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

1) 본인에게 부정행위 의심 사실을 통보하고, 관련된 물품이 있다면 회수한다.
(시험지와 답안지는 회수하지 않으며, 해당 시간의 시험을 끝까지 풀도록 한다.)
2) 해당 시험 시간이 종료되면 평가 본부(교무기획부장)에게 보고한다.
3) 해당 일의 시험이 모두 종료된 이후 확인서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부정행위 의심자의 자술서는 담임교사가 위원회에 제출한다.)

⑤ 고장 난 휴대폰 소지 등 고의성이 없는 단순히 휴대폰, MP3, 전자시계 등을 소지하고 시험을 보았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처리한다.

2026. 11. 2.

지 축 중 학 교 장 (직인생략)